

#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연월일 : 1998. 7. 1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## 1. 개정사유

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할때에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확대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○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용 공동주택 규모를 당초 전용면적 60㎡이하에서 전용면적 85㎡이하로 확대함(안 제12조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○ 도세정13400 - 316('98.05.29)호 「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통보」

## 4. 본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#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중 "60제곱미터이하인"을 "85제곱미터이하인"으로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